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개최 의무화〉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72호)

2025.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개최 의무화	2
※ 참고자료	
1.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개최 현황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 13.

다. 회부연월일 : 2025. 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중앙행정기관 중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있어 해당 규정에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음. 또한, 전문용어표준화 협의회가 구성되었더라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전문용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와 국민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회의를 두도록 하고, 회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전문용어를 적극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개최 의무화

가. 개정안 요지

-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의무화(안 제17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생략)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u>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u> 를 둔다.	② ----- ----- ----- <u>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u> 를 두어야 한다.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는 <u>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17조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¹⁾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기 위해 국가가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협의회 설치규정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법 제6조 제3항제10호)과 함께 2017년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국어기본법」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

③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문용어 표준화’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공공 전문용어를 일정한 정비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다듬어 알맞은 용어로 정하는 것’을 말함(「2020 전문용어 표준화 안내서」, 국립국어원, 2020.10.)

-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 절차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²⁾.

○ 그런데 2024년 12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이 완료된 기관은 전체 48개 기관 중 33개 기관(68.8%)이며, 이 중 13개 기관은 협의회가 구성되었음에도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표준화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표준화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2.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표준화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의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요청 목록
 2.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관련 서류
 3.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요청한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관련 서류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도서 제작, 공문서등 작성과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표준화협의회의 운영 실적 등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분	기 관 명
구성 완료 (33)	▶ (17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3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8청) 국가유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통계청, 기상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소방청 ▶ (5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밑줄 친 기관은 협의회 개최실적이 없는 기관임
미구성 (15)	▶ (2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 (13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재외동포청, 우주항공청, 경찰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검찰청, 방위사업청 ▶ (1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참고로, 협의회 의 성과를 살펴보면 2017년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21개 기관에서 총 856개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음³⁾.

○ 이에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협의회 설치 및 연 1회 이상의 협의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용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와 국민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정부가 사용하는 용어는 언론을 통해 전파됨에 따라 영향력이 크고, 사회 내에서 보편적 용어로 자리 잡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동 검토보고서 6p. [참고 1]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개최 현황 참조

4) 전문용어 표준화 사례로서,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인터넷주소(URL, Uniform Resource Locator), 비대면(언택트), 갯길(길어깨, 노견), 가사 도우미(홈헬퍼), 팻말(피켓), 둔치(고수부지)

- 현행법 제17조제2항에서 표준화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여 명확한 의무부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이 ‘두어야 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의무규정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의 어려운 전문용어를 표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정보의 불균형과 국민의 바른 정책정보로부터의 소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수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80

등이 있음.

참고 1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개최 현황

- (구성) '24.12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이 완료된 기관은 48개 기관 중 33개 기관(전체 대비 68.8%)

구분	기 관 명
구성 완료 (33개 기관)	▶ (17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3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8청) 국가유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통계청, 기상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소방청 ▶ (5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구성 (15개 기관)	▶ (2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 (13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재외동포청, 우주항공청, 경찰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검찰청, 방위사업청 ▶ (1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개최) '17년 국어기본법 개정('17.9.22 시행) 이후, 21개 기관에서 총 856개 용어 정비

연번	기관명(개최횟수)	정비용어 건수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	문화체육관광부(4)				15		11	92	44	162
2	국토교통부(5)	16				60	103	8	31	218
3	행정안전부(1)						11			11
4	산업통상자원부(2)		29			102				131
5	외교부(2)				16				4	20
6	교육부(1)					37				37
7	농림축산식품부(3)				17	17	11			45
8	보건복지부(1)				29					29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20				20
10	기상청(1)				25					25
11	해양경찰청(2)				8		9			17
12	산림청(4)				18		2	2	2	24
13	소방청(2)					9	4			13
14	국민권익위원회(5)		12		8	1	4		4	29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8			8
16	병무청(1)							5		5
17	농촌진흥청(1)							10		10
18	방송통신위원회(1)			9						9
19	인사혁신처(3)						5	1	3	9
20	고용노동부(1)								4	4
21	중소벤처기업부(3)						8	12	10	30
계(46)		16	41	9	136	246	176	130	102	856